#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5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7.

발 의 자: 김소희·김위상·김성원

이인선 · 서지영 · 김대식

우재준 · 김예지 · 김상훈

김선교 · 최보윤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,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. 이 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을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·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 하게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2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단서 중 "국토교통부에는"을 "국토교통부·환경부에는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행정각부) ① (생 략)	제26조(행정각부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	2
관 1명을 두되, 장관은 국무위	
원으로 보하고, 차관은 정무직	
으로 한다. 다만, 기획재정부·	
과학기술정보통신부・외교부・	
문화체육관광부 · 산업통상자원	
부·보건복지부· <u>국토교통부에</u>	<u>국토교통부·환경부</u>
<u>는</u> 차관 2명을 둔다.	<u>에는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